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073

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수진・박홍배・정동영

송옥주 · 김정호 · 민형배

한정애・송재봉・김 윤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무인정보단말기,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사용을 통해 소비·거래 등 생활방식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지만, 디지털 문화에서 소외된 노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.

음식점, 영화관 등 서비스업의 곳곳에 키오스크가 도입되면서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높은 불안감을 겪거나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음. 또한, 노인들의 낮은 스마트 기기 활용률로 인 해 다른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도 심화되고 있음. 노인 들이 경험하는 이 같은 현상은 단순히 개인의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.

이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·운영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제공하는 자로 하여금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,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노인 인권·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자 하는 것임(안 제4조의3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3(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 나 서류발급, 주문・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 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-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노인 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 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 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하고,

제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 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(이하 이 조에서 "고령친화도시"라 한다)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의4(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 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·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 -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 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 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노인 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

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 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제4조의3 및 제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4조의3(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 ・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주문・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유・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하는 데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데

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

제4조의3(편의제공의무) ① 재화
·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정
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
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
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
주문・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
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영하
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
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
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
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 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093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

제4조의3(고령친화도시) ① 국가 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, 돌 봄 및 안전, 건강하고 활력 있 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 책을 운영하는 지역(이하 이 조에서 "고령친화도시"라 한다) 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자치 시·특별자치도 또는 시·군·구 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를 고령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·

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·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절차·취소, 지원 내용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.

제4조의4(편의제공의무 등) ① 재화・용역 등의 제공자는 무인 정보단말기(터치스크린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화면에 표시하여 제공하거나 서류발급, 주문・결제 등을 처리하는 기기를 말한다)를 설치・운영하는 경우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・이용할수 있도록하는 데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한다.

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이 동통신단말장치(「전파법」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 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 한다)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 웨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・무선 정보통신을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 근・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 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·용역 등의 제공자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